

## 한일 세관행정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Sugges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on  
in Korea and Japan

라공우(Kong-Woo La)

경인여자대학 무역과 부교수(주저자)

강진욱(Jin-Wook Kang)

경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교신저자)

김형철(Hyoung-Cheol Kim)

경인여자대학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원(교신저자)

### 목 차

I. 서론	IV. 일본 관세 및 세관행정 개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일본 관세·세관행정의 변화배경	V. 결론
III. 일본 관세 및 세관행정 주요 개정내용	참고문헌
	Abstract

### 국문초록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일본세관행정, 관세법, AEO, EPA, TPP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09-32A-B00114)

## I. 서 론

일본의 관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며, 각종 세칙사항은 3개의 법률(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관세는 특혜관세와 비 특혜관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혜관세(관련법령: 관세잠정조치법)는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 개도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FTA 체결국에 적용하는 관세에 적용된다. 비 특혜 관세(관련법령: 관세법기본통달 68-3-5)는 협정(WTO)관세와 기본 관세가 있는 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적용 받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관세제도의 특징은 신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일본 관세제도의 기본목표는 "신속과 정확"이라는 2대 명제를 두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신속"을 우선시하는 조치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었고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일본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등의 경제연계협정으로 시장개방을 통한 일본경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천명하여 적극적인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세관은 국제무역의 안전확보와 무역의 원활화라는 모순된 두 사안을 충족하기 위해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supply chain 전체를 망라할 정도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보안유지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의 부과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세탈세범 및 탈세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각 성세 등의 마약류 밀수출입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EPA나 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AEO 제도의 심화 및 세관업무 및 관세의 과세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에 맞추어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해 일본 재무성의 관련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일본 관세·세관행정의 변화배경

### 1.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에 관한 전체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일본의 통관제도, AEO 제도 내지는 한일간 관세협력 또는 한일간 AEO 상호인증협정에 대한 연구 등 주로 AEO 제도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이남구·곽현(2005)은 일본과 통관EDI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한일간 통관 EDI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적용해야 할 내용과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김종성(2008)은 일본의 통관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통관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통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이신고제도와 특송화물의 신속화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안재진(2008)은 우리보다 앞서 시작한 일본의 AEO 제도의 동향을 조사 분석한 후 일본 AEO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 나갈 AEO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최준호·한상현(2010)은 일본의 통관업자(우리나라의 관세사)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AEO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AEO 제도의 상호인정협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양국간의 통관업자 AEO 인증기준이나 요건은 거의 유사하며 양국이 거대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협정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 2. 관세 및 관세율의 개정배경

현재 일본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011년 3월에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하여 일본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의 많은 제조업체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2011년 약 2조 5000억엔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1980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하였으며 일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30%까지 상승하여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채비율을 기록하여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나 포르투갈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유가와 엔고 등 앞으로의 일본경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적극적 추진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즉 2011년 8월 일본 각의 결정사항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연계협정을 통하여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경제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통한 경제안전보장을 확립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에 우리나라와 EU와의 FTA가 발효된 것에 자극을 받아 일본과 EU의 EPA교섭 조기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우리나라, 캐나다, 몽골, 한중일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과의 EPA교섭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 TPP)의 경우는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자유 무역권 형성을 위한 첫 번째 교섭으로서 농업을 포함한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본 국내의 개인소비나 투자가 거의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대외무역의 증가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가장 피해를 산업분야가 농업과 수산업 분야이며 대지진과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일본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나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투자처를 이전하고 있으며 원자력 사고로 인한 전기료의 인상, 생산시설의 파괴 등으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적어도 일본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EPA나 TPP 등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 3. 세관행정 변화의 배경

세관행정은 글로벌 경제의 심화, 물류의 고도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효율화가 일본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일본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관단속의 강화 및 관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통하여 무역거래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무역입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극적인 수출촉진전략을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촉진을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역거래 프로세스의 원활화가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EPA 및 TPP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세관도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도 2009년 12월에 신성장 전략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 방침에서 무역관련 프로세스의 원활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무역의 안전확보와 원활화의 양립을 목적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계속적으로 정비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수출업자와 관련한 AEO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수입업자, 창고업자, 통관업자(관세사), 운송인과 제조업자 등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supply chain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AEO 제도가 구축되었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AEO제도의 상호인정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뉴질랜드, 미국, EU, 캐나다와 AEO제도를 상호간에 인정하였으며, 앞으로도 AEO 제도를 통하여 security의 유지, 편의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이나 AEO제도의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은 지금까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책정하는 지적재산 추진계획 등에 따라서 수입금지 신청제도의 대상범위 확대, 수출금지 신청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제도의 충실 및 강화가 이루어져 왔다. 2010년 11월에는 공정한 무역과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모방품-해적판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모방품 및 해적판 확산방지조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ACTA)의 체결을 일본이 강하게 주장하여 본 조약의 교섭관계국 사이에서 최종적인 조약 초안이 확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각성제의 밀수사범 적발건수가 2009년에 최고기록을 기록하는 등 부정약물의 밀수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부정약물 남용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한 세관대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테러에 대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관입장에서도 더욱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 Ⅲ. 일본 관세 및 세관행정 주요 개정내용

#### 1. 특혜관세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 1) 특혜관세제도 개정에 대한 기본방향

특혜관세제도는 1971년에 처음 도입되어 일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성장 지원책의 차원에서 10년 주기로 연장되어져 왔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이나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연장을 결정하게 되나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왔다.

일본의 특혜관세제도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독특한 ceiling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ceiling이란 각 년도 초반에 일정한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매달 수입실적을 관리하여 설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년도말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또한 ceiling제도를 악용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이 ceiling 한도의 1/5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국가의 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본 국내생산자 보호와 개발도상국의 일본 시장접근에 관한 기회확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하여 민감 광공업품을 중심으로 민간품목 1,182품목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EU 등 주요 국가들은 ceiling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90년대 중반에 ceiling 제도를 철폐하였으나 선진국 가운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sup>1)</sup>. ceiling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년도 도중에 특혜관세 적용을 중지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불필요한 수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다양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넷째, 특정국가의 수입액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년도 초반에 특정 국가가 ceiling 한도를 모두 소모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 당국도 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다른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행정적인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본 제도를 폐지한다면 원칙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제한으로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본 국내생산자의 반발과 당해 산업의

1) JETRO, यू-로트렌드레포트, 2000년 10월, p.2.

피해가 예상되어 특혜관세율의 인상, 특혜관세율 적용대상품목의 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특혜관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후발 개발도상국(Least Developed Country : LDP)을 제외한 특혜관세 수혜국의 물품으로서 그 수입액이 당해 물품 총 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 3년 평균 수입액이 15억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계속 적용한다.

둘째, 농수산물(제1-제24류)에 대해서는 HS 9단위로 적용하고, 광공업품(제25-제97류)는 HS 4단위로 적용한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정량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혜관세적용 수입액이 당해 개발도상국의 총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의 25% 이상인 경우, 만일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해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넷째, 개발도상국과 EPA를 추진하는 경우, EPA 세율이 특혜관세율보다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정량기준에 도달해도 특혜관세를 계속적으로 적용한다.

특혜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은 예전부터 세계은행통계의 고소득국(1인당 국민총소득이 미화 12,196달러)으로 3년 연속 해당되는 경우에 특혜관세율의 적용대상국가에서 탈퇴하게 된다. 올해에는 아프리카의 오만, 트리니타드 토바고 등이 본 기준에 부합하여 특혜관세의 적용대상국가에서 제외된다.

〈표 1〉 특혜관세제도 개정조문 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p>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특혜관세등)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고유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제도를 가진 지역포함)이며, 관세에 대해서 특별한 편익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 가운데 당해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국가(이하 특혜수익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서 하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물품으로 평성33년(2021년)까지 수입되는 것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다.</p>	<p>관세잠정조치법 제8조의 2 (특혜관세등)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고유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제도를 가진 지역포함)이며, 관세에 대해서 특별한 편익을 받기를 원하는 국가 가운데 당해 편익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정령에서 정한 국가(이하 특혜수익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서 하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물품으로 평성23년(2011년)까지 수입되는 것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따른다.</p>

## 2) 중국산제품에 관한 특혜관세제도의 개정

이번 관세잠정조치법의 개정으로 상당수의 중국산 제품이 특혜관세제도의 적용외 상품으로 분류되어 특혜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중국산 한방약재와 불화수소는 장기간 동안 0%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중국산 한방약재의 경우는 2011년 4월부터 2.5%의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불화수소는 2012년 4월부터 3.3%의 협정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두 품목의 기본세율을 0%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산 한방약재의 경우 일본 내 소비량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즉 일본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이 매우 적고, 한방약품 제조업체와 직접 재배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0%로 개정해도 일본 국내 생산업체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으며 만일 세율을 높였을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하여 오히려 일본 국내 한방 생산업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0%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HS0910.10-2-(2)ex 및 HS 1211.90-4ex).

또한 불화수소의 경우도 중국산 제품이 96%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불화수소의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일본 국내생산업체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0%의 특혜관세율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방약재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을 0%로 개정할 것으로 사료된다(HS2811.11).

따라서 2012년 4월부터 특혜관세적용이 해제되는 중국산 제품은 다음과 같다.

〈표 2〉 특혜관세율이 해제되는 중국산 농수산물

HS Code	품명	협정세율	특혜세율
2005.99-2-(4)-(A)-(b)	조제 또는 보존에 적합한 처리를 한 기타 야채(냉동하지 않은 것에 한하며 식초나 산에 의해서 조제 또는 보존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 또는 제20.06항의 물품은 제외), (기타의 물품 가운데 마늘가루 제외)	12%	9.6%

〈표 3〉 특혜관세율이 해제되는 중국산 광공업상품

HS Code	품명	협정세율	특혜세율
28.11	기타의 무기산 및 무기비금속 산화물	3.3%-3.6%	0%
65.04	모자	4.4%	0%
70.07	안전유리	3.5%	0%
90.04	시력교정용 안경, 보호용 안경 기타 안경	5.3%	0%

### 3) 섬유제품에 관한 특혜원산지규칙

일본으로부터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원산지 규칙에 따라서 당해 물품이 해당 개발도상국의 원산품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규칙은 일반 원산지규칙보다 더욱 엄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제품의 경우는 일본에서 원료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당해 원료로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 완제품 생산국가를 원산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제품(HS제50-제63류)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섬유제품의 생산에 아주 작은 분량의 비원산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의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니트류(HS코드 61)의 경우 원산지 규칙은 가공공정기준만이 적용되고 부가가치 기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방적, 편립, 봉제공정을 이행해야 하며 니트류 생산에 필요한 섬유의 일부를 수입하여 혼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sup>2)</sup>.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다른 물품과는 다르게 섬유제품의 원산지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2. 면세제도 및 가공 재수입 감세제도의 주요 개정내용

### 1) 면세제도

일본은 과거 항공산업,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미국 등 승전국의 강압에 의해서 항공산업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항공기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이며 또한 일본 제조업 전체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2010년 10월 소형 제트여객기의 생산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산업도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일본 경제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 관련 부품 가운데 상당 부분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일부 주요 부품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및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2011년 3월 31부로 이 면세제도의 적용기간이 만료되었다.

2) JETRO, 纖維製品の對日輸出にかかる原産地規則

본 제도는 첫째, 항공기 부분품과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 가운데 일본산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것, 둘째, 인공위성,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등의 부분품 및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 가운데 일본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다<sup>3)</sup>.

따라서 항공기 및 우주산업 협회 등 관련업계에서 잠정조치의 연장을 요구하였고 일본의 항공산업 및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면세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sup>4)</sup>.

〈표 4〉 면세제도 개정조문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관세잠정조치법 제4조 (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 다음의 물품 가운데 일본에서 제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것은平成26년(2014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어지는 것에 한해서 정령에서 정한 것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잠정조치법 제4조 (항공기부분품 등의 면세) 다음의 물품 가운데 일본에서 제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것은平成23년(2011년) 3월 31일까지 수입되어지는 것에 한해서 정령에서 정한 것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 2) 가공 재수입 감세제도

가공 재수입 감세제도는 일본에서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하여 외국으로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완제품을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 부과된 관세 가운데 원재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이다<sup>5)</sup>. 1969년부터 시작된 본 제도는 일본 국내의 원재료 생산자를 보호하고 일본산 원재료의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현재 섬유 및 피혁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섬유 및 피혁산업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의 저가 제품의 수입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관련업계로부터 본 제도의 연장에 대한 요청이 이루어졌다. 또한 당해 제품과 동종의 제품을 일본국내에서 제조하는 관련업계에서 본 제도의 존속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가공 재수입 감세제도를 관례에 따라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sup>6)</sup>.

3)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4조

4) 일본재무성 관세국, 暫定的減免税制度の適用期間の到來について, 2010년 10월 29일, pp.1-2.

5)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제8조

6) 전계주4, p.3.

〈표 5〉 감세제도 개정조문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p>관세잠정조치법 제8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면세)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평성26년(2014년) 3월 31일까지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다음에 열거한 제품으로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입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령에 규정된 대로 당해제품의 관세액에 당해 수출된 화물이 수출허가시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해서 수입된 것으로 한 경우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당해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더하여 산출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p>	<p>관세잠정조치법 제8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수출된 화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면세)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해 평성23년(2011년) 3월 31일까지 일본에서 수출된 화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다음에 열거한 제품으로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수입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령에 규정된 대로 당해제품의 관세액에 당해 수출된 화물이 수출허가시의 성질 및 형상에 의해서 수입된 것으로 한 경우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당해제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더하여 산출한 액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p>

### 3. 잠정세율 및 특별긴급관세제도

#### 1) 잠정세율

2011년 3월 31일에 적용기간에 만료된 잠정세율은 2011년에 기본세율로 전환된 9개 품목을 제외하면 415품목이다. 현재 잠정세율의 적용품목은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이전에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한 당밀, 무당 코코아 등 66품목,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라 내외가격차에 해당하는 고관세를 설정한 탈지분유, 버터, 쌀 및 보리 등의 170품목 등 총 415품목이다<sup>7)</sup>.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일본 국내의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관련 당사국 및 WTO 등의 국제기구와의 관계, 국내정책상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2011년에 적용기간이 만료된 잠정세율 적용품목에 대해서 1년간 연장을 하였다.

7) 제무성, 平成22年關稅改正における主な検討項目, 2010년 12월 1일, p.1.

〈표 6〉 잠정세율 개정조문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잠정세율) 별표1에 열거된 물품으로 평성24년(2012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것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동표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관세잠정조치법 제2조 (잠정세율) 별표1에 열거된 물품으로 평성23년(2011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것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동표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 2) 특별긴급관세제도

일본은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후, 1999년부터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쌀을 비롯한 외국산 농산물 및 소고기 등 축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일본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관한 긴급관세제도를 두고 있다. 소고기의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서 실행세율을 협정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긴급관세제도가 2011년 3월 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었지만 본 조치를 폐지하거나 시정할 사정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제도를 관례대로 1년간 연장하였다.

소고기의 경우는 특별긴급관세제도의 발동기준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수입실적을 특별긴급관세의 발동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문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실적이 광우병 발생 이전의 수입실적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고기 등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도의 발동기준을 전년도 수입실적 또는 2002년과 2003년의 수입실적 평균치 가운데 높은 쪽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기준을 폐지하고 전년도 수입실적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광우병 발생 이전의 수입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4. 세관행정의 주요 개정내용

### 1) 해상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적하정보 사전보고의 시기조정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WCO는 “국제무역의 안전 확보 및 원활화를 위한

WCO 기준”에서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정보를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전에 수출지 또는 수입지의 세관에 전자적인 형태의 정보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기한은 선적전 24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국을 목적지로 하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선적 24시간 전까지 적하에 관한 상세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입항 24시간 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선사 등이 발행하는 master B/L의 정보를 기준으로 적하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 화주의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house B/L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는 적하정보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적하정보 제출 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정보 제출을 강제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자정보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세관은 WCO 기준이나 미국, EU 등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security면에서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보고 시기와 정보내용의 상세 및 전자화 등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보고기한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선사 등 외국무역선의 운항자는 당해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정보(master B/L 정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선적 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고 하는 개항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출항시간의 기준은 일본에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이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는 외국 항구를 출항하는 시간으로 한다.

다음으로 freight forwarder 등의 경우에는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house B/L 정보)를 원칙적으로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고자 하는 개항의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과 같은 근접한 국가들의 컨테이너 화물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과화물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보고를 요구하도록 하였다.

둘째,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국, EU에서 시행중인 보고내용과 현재 일본 NACCS에서 시행중인 적하정보 보고항목을 기본으로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칙적으로 NACCS를 이용한 전자보고를 의무화하고 NACCS 운영주체와 계약한 일정한 security 요건 등을 충족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도 전자보고를 가능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변경된 사전보고제도의 도입시기는 법률 공포일로부터 2년 후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2014년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수출통관시의 보세구역 반입원칙의 조정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신고는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신고의 경우에도 일본 관세법상 신고대상화물을 반드시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의 세관행정은 우리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화물을 보세구역 등으로 반입한 후부터 수출허가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수출화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물류원활화 차원에서 수출신고를 보세지역 등에 반입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부정수출 또는 소비세 부정환급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보세지역반입 후 수출신고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화물의 심사, 검사 및 허가 등 통관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상기의 절차가 하나의 세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신고 세관은 수출허가를 받기 위하여 화물을 반입한 보세장치장 등을 관할 세관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나 일본의 관청은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표 7〉 보세구역 반입원칙 개정조문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관세법 제67조의 2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수속)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는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당해 신고와 관련있는 화물을 반입하는 보세지역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한다.	관세법 제67조의 2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의 수속)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는 당해 신고와 관련있는 화물을 보세지역 등에 반입한 후에 해야한다.

## 3) 세관행정에 변화에 따른 AEO제도의 개선

AEO제도는 무역거래의 안전확보와 원활화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화물의 security 관리와 법령 준수에 관한 체제가 정비된 사업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간단한 세관수속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본의 AEO 인증 취득과 관련한 요건은 첫째, 세관 수속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높은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둘째, 세관수속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체제 및 매뉴얼 등의 정비 등 법령준수에 관한 규칙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셋째, 관세법 등의 위반사항 등 일정기간동안 법률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하게 된다.

지금까지 AEO 인증을 받은 일본의 수입업자는 2001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76개사로서 화물도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즉시 물품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화물 인수 후에 납세신고가 가능하며 1개월 분의 납세신고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물품심사 및 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출업자의 경우는 2006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231개사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및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물품심사 및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창고업자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79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새로운 보세장치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세장치장 허가수수료가 면제되며 검사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통관업자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27개사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화물도착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 즉시 물품인수가 가능하다. 또한 화물 인수 후에 납세신고가 가능하며 1개월 분의 납세신고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며 AEO운송업자가 운송을 하는 경우 물품을 보세지역 반입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운송업자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개사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보세운송을 할 때마다 보세운송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또한 당해 운송업자가 운송을 하는 경우 AEO 통관업자는 물품을 보세지역 반입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 7월부터 인증취득이 가능하지만 2010년 9월까지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없다. 만일 제조업자가 인증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제조한 물품을 보세지역에 반입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sup>8)</sup>.

본 제도는 환경 및 법령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 및 조정을 하여 security의 유지 및 사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AEO 사업자가 아닌 수출업자가 AEO 통관업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특정위탁수출신고, AEO 제조업자가 관여하는 특정제조화물 수출신고의 경우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나 수출허가는 보세지역에 반입한 후에 가능하다. 그러나 AEO 수출업자에 의한 특정수출신고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와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매우 모순된 점으로 특정위탁 수출신고나 특정제조화물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에서 물

8)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재정금융통계월보 제699호, p.73.

품을 선적하기 위하여 보세지역 등에 반입되기까지 화물의 보안관리가 AEO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수출신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정위탁수출신고나 특정제조화물 수출신고도 특정수출신고와 동일하게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적절한 security 관리하에서 물류원활화를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AEO 사업자가 아닌 당사자의 화물도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된다면 굳이 AEO 인증을 받지 않은 당사자와 특정위탁수출신고나 특정제조화물 수출신고의 당사자와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AEO 인증을 받은 당사자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위탁수출신고나 특정제조화물 수출신고의 경우 보세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AEO 창고업자 및 AEO 통관업자가 AEO 사업자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상황에 의해서 본래의 업무는 유지하면서 AEO 사업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EO 제도의 적절한 운영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AEO인증의 취소에 관한 수속절차를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sup>9)</sup>.

<표 8> 보세구역 반입에 관한 개정조문과 구조문의 비교

개정조문	구조문
관세법 제30조 외국화물은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둘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한다 5. 제67조 3의 제1항(수출신고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가 이루어지고 세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화물(이하 특례수출화물이라 한다)	관세법 제30조 외국화물은 보세지역이외의 장소에 둘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한다 5. 제67조 3의 제1항(수출신고의 특례)에서 규정한 특정수출신고를 이행하고 세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화물(이하 특정수출화물이라 한다)

#### 4) 지적재산권등의 보호를 위한 세관단속의 강화 및 항공기 여객의 예약정보 등 보고제도의 도입

불법복제 제품이나 불법복제 영상물 등은 원칙적으로 수출입금지 품목으로 각 국 세관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거래의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9) 岸元浩, 平成22年度關稅改正について, ファイナンス, 2010년 2월 p.21.

즉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수 없도록 암호를 설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암호를 해독하여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들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복제 영상물 등의 지적재산 침해물품은 일본의 경우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들은 근거법률이 없어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등에서 일본국내규제가 정비된다면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세관단속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등의 회로배치이용권 침해물품에 관한 수출규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기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률에 회로배치이용권 침해물품에 관한 수출규제가 명기된다면 관세법상의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9〉 수출입 금지품목에 관한 개정조문과 구 조문의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관세법 제69조 2 다음의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호에서 3호, 10호 및 11호의 행위를 구성하는 물품 관세법 제69조 11 다음의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호에서 3호, 10호 및 11호의 행위를 구성하는 물품	관세법 제69조 2 다음의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호에서 3호의 행위를 구성하는 물품 관세법 제69조 11 다음의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1호에서 3호의 행위를 구성하는 물품

또한 일본은 2006년 관세법을 개정하여 공항에 입항하는 외국무역기 등의 기장에게 여객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의 사전보고를 의무화하여 각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테러 또는 부정약물 등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대조하여 요주의 인물을 색출하는 등 국가안전과 관련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여객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항공회사가 동의한 경우에 항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의 예약 및 탑승권 등에 관한 정보(Passenger Name Record: PNR)을 입수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률이 시행되어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세관이 항공회사에게 PNR의 보고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공회사로부터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관이 PNR을 입수하여 확실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PNR을 강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포함하여 여객의 예약정보 등을 항공회사에게 보고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만일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기관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테러나 불법약물 등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표 10> 입항수속에 관한 개정조문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p>관세법 제15조 입항수속</p> <p>10 세관장은 관세법 제69조의 11 및 본 법률규정의 실시를 확보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세관공항에 입하는 외국무역기에 여객이 탑승하는 자의 운항자 기타 제무성령에서 정한 자에게 당해 외국무역기의 입항전에 당해 외국무역기의 예약자 및 예약자에 관한 예약내용, 예약자의 휴대품 및 당해 예약자가 외국무역기에 탑승하기 위한 수속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관세법 제 15조 입항수속</p>

### 6) 보세지역허가 수수료의 조정 및 특수관세 조사개시 요청에 관한 프로세스의 개선

일본의 경우 보세지역의 허가를 받은 당사자는 보세지역 허가수수료를 매달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수수료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제물류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일본항만의 국제경쟁력이 계속 저하되었다. 일본의 동경항이나 고베항은 과거 동아시아 최고의 항만이었으나 불필요한 규제와 고액의 항만 및 물류비용 등이 원인으로 현재는 상해항이나 부산항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항만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010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전략 및 같은 해 9월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전략의 실현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에 따라 보세지역허가 수수료를 인하하여 비용절감 및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입시의 내국세 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정청구 등에 관한 기간제한의 조정, 세무조사시의 사전통지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법령상에 명기 하였다.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또는 관련 국내생산자의 요청에 따라 관세부과전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국내생산자의 지지상황의 파악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부과의 지지를 표명한 일본 생산자의 생산량”이 “당해 화물의 생산량”에서 “관세부과청구에 반대하지 않는 것을 표명한 생산자의 생산량”을 뺀 생산량보다 많아야 한다.

이것은 “지지를 표명한 일본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생산자”, “반대를 표명한 일본 국내생산자” 및 “찬반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일본 국내생산자”의 생산량에 의한 생산량에 접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의 경우는 찬반여부가 불투명한 생산자가 분모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WTO 협정과 상반된 내용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다수 포함된 산업의 경우는 찬반여부가 불투명한 생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를 위한 지지자를 포섭하는 것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개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찬반여부가 불투명한 생산자를 분모에서 삭제하여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생산자가 반대하는 생산자를 상회하는 경우에 조사개시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하였다.

<표 11> 과세요청에 관한 개정조문과 구 조문 비교

개정조문	구 조문
상계 및 반덤핑관세의 수속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5조 과세의 요청등 (3) 지지의 상황이 관계 생산자 또는 관계 노동조합의 지지상황에 의해서 과세요청을 지지하는 관계 생산자 등의 당해 수입화물과 동종의 화물이 국내의 생산자 합계가 당해 요청에 반대하는 관계 생산자 등 및 국내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의 국내생산합계를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을 지지하는 관계노동조합의 구성원 가운데 당해 화물의 국내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합계가 당해 요청에 반대하는 관계 노동조합의 구성원 가운데 당해 화물의 국내생산에 종사하는 자 또는 국내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의 당해 화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법8조 5항, 22항 또는 27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계 및 반덤핑관세의 수속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 5조 과세의 요청등 (3) 지지의 상황이 관계 생산자 또는 관계 노동조합의 지지상황에 의해서 과세요청을 지지하는 관계 생산자 등의 당해 수입화물과 동종의 화물이 국내의 생산자 합계가 당해 화물의 국내 총생산고에서 당해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 관계생산자 등(요청을 지지하는 자를 포함)의 당해 화물의 국내 생산고의 합계를 공제한 생산고를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요청을 지지하는 관계노동조합의 구성원 가운데 당해 화물의 국내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합계가 당해 생산에 종사하는 자의 총수에서 당해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 관계노동조합(지지자를 포함)의 구성원의 인수를 공제한 인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법8조 5항, 22항 또는 27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벌칙수준의 조정 및 통관관계서류의 간소화

현재 일본 관세법에서 관세면탈죄에 대한 벌칙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흐름이 복잡하게 되어짐에 따라 면탈수법이 더욱 악질적이고 고도화되어가고 있으며, 면탈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내국세 면탈범이나 경제사범에 대한 벌칙규정과 비교해도 벌칙수준이 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적정한 납세신고를 촉진하고 내국세 면탈죄 또는 다른 경제사범에 대한 벌칙수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관세면탈범에 대한 벌칙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sup>10)</sup>.

한편 금지품 수출입죄에 대한 벌칙수준의 상향조정도 검토중 이다. 일본은 현재 마약류의 밀수입이 급증하여 부정약물에 소지 및 사용사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각성제 밀수적발건수가 과거최고를 기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관세법상 마약류 등의 밀수출입에 대한 벌칙수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나 부정약물, 총기류 등의 부정유출입을 억제하고 각성제규제법, 총기류 등에 대한 규제법 및 관세법상의 관세면탈죄의 벌칙수준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벌칙수준을 상향조정 되었다.<sup>11)</sup>

또한 일본은 수출입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출입신고서에 NACCS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여 현재 수출입신고의 약 98%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NACCS 시스템을 강화한 차기 NACCS 시스템이 2017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차기 NACCS에서는 통관관계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관관계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수출입신고서에 송장제출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으나 NACCS를 이용한 수출입신고 가운데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수출입을 허가하고 수출입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장 등 통관관계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사후에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가 불필요하여 즉시 수출입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관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세관원이 수출입 사후 방문조사를 통하여 수출입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수출입 사후 방문조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입업자는 세관에 제출하지 않은 통관관계서류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고 전자무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전자적 형태의 기록을 받

10) 전계서, p.5.

11) 상동.

드시 보존해야 한다.

또한 필수제출서류인 송장의 경우 송장 이외의 통관관계서류를 통하여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반드시 송장제출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송장의 경우 다른 통관관계서류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경우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 8) 면세 컨테이너의 국내운송 사용에 관한 조건완화

수입 후에 재수출되어지는 컨테이너와 공컨테이너로 수입되어 물품이 적입된 후 재수출하는 컨테이너는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받은 컨테이너를 국제운송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수입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및 소비세가 즉시 부과된다. 또한 물품이 적입되어 수입된 면세 컨테이너에 대해서 당해 물품의 적출지에서 적입지 등까지 통상의 경로를 통하여 운송되어지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재수출 기간내에 1회에 한해서 국내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면세 컨테이너를 국내운송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과거 일본산 컨테이너와 외국산 컨테이너가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본산 컨테이너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이미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또한 수입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내륙지까지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면세 컨테이너를 3개월 이내에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면세 컨테이너의 재수출 기간 연장수속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면세 컨테이너의 일본 국내운송 사용에 관한 조건 및 세관장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면세 컨테이너의 재수출 기간의 경우도 대부분의 면세 컨테이너가 1년 이내에 재수출되고 있으며 또한 관세정률법의 재수출 면세제도상의 재수출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재수출 기간도 1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 IV. 일본 관세 및 세관행정 개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 1. 일본의 관세행정 개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본의 관세행정 개정내용은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에 적용되지 않는 개정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한 시사점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쌀수입의 관세화에 대비하여 일본의 쌀에 관한 관세율과 특별긴급관세제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쌀에 대한 소비가 저조한 상황에서 계속 관세화를 유예한다면 의무수입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1999년에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를 결정하여 778%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UR 타결이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쌀의 관세화를 유예하여 2004년 12월의 WTO 협상에서 2014년까지 쌀의 관세화 유예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에 대한 반대급부로 최소수입물량은 2014년까지 국내 소비규모의 7.96%인 408,700톤으로 증가되었고 현재의 쌀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한다면 12%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up>12)</sup>.

우리나라는 과거 쌀의 관세화에 대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였으나 2000년 이후 쌀 소비의 감소와 지속적인 풍작으로 쌀의 관세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또한 두 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 이후에는 의무관세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쌀의 관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이며, 만일 쌀의 관세화를 이행한다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쌀에 대한 적정관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쌀의 관세화에 따른 우리나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일본의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주목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일본의 세관행정 개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관세 및 통관관련 법령을 제정할 때 일본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였기

12) 최홍석·김은미, 쌀시장 개방의 딜레마-시기별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3호, 한국정부학회, 2011년, p. 922

때문에 양국의 관세 및 통관관련 법령이나 제도면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일본의 경우 관세 및 통관분야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통관 분야에 있어서 신속성이나 화주에 대한 서비스면은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이 물류원활화 보다는 국민의 안전에 세관행정의 비중을 더 많이 두어 왔던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일본은 수출입통관에 있어서 AEO 인증업자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출입물품을 세관의 관리하에 두고 불법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세관행정은 물류원활화를 위해 통관제도를 단순화해 나가면서 물품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현재 각 세관의 물품검사비율은 5%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위험관리기법을 이용한 우범화물 선별기준(Cargo Selectivity)에 따라서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세관검사가 운용되고 있으나 본 방식의 완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업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세관행정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의 세관행정의 개정내용을 보면 장기간의 경제불황과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보수적인 세관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무역원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원칙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세관을 24시간 운영하는 관청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무역관계나 앞으로의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세관협력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상컨테이너 화물의 적하정보 사전보고의 시기조정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입항 24시간 전까지 master B/L 정보를 기초로 한 적하정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EU 정도의 수준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화주나 관세사 등 관련 당사자들은 일본의 관련규정 개정사항을 유념하여 대일수출시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AEO 제도의 개정방향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현재 AEO 제도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의 AEO 제도와 인증요건 등은 거의 유사하나 몇 가지 쟁점사항이 존재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수출입 업체와 관세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당사자를 AEO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6개 당사자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인증받은 당사자는 수출업체가 대부분이며 통관업자는 27개에 그치고 운송인 전

13) 재무성, 平成22年度關稅改正の概要及び規模, 2010년, p.65.

무한 상태이다. 이는 일본의 정책이 수출촉진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에게만 편중되어 있으며 운송인의 경우에는 운송의 상당부분을 하청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어서 해당기업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sup>14)</sup>.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관당국은 일본의 AEO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유의하여 양국의 상호인정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련 단속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으나 암호해독기와 같은 하드웨어에 관한 단속은 불충분한 상태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넷째, 항공기 여객의 예약정보에 보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가가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며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 V. 결 론

일본은 장기간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의 세관당국도 관세 및 세관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EPA의 체결에 따라 관세 및 세관행정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라서 지금까지 매우 보수적이었던 세관행정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쳐져 있었지만 지금까지 매우 보수적이었던 일본의 세관행정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과 국가의 안전(safe)·안심을 위한 세관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즉 문제가 없는 수출입물품은 신속하게 통과하는 한편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수출입물품의 통과를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는 반도체 집적회로나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상의 침해물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 및 컨설팅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14) 최준호·한상현,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MR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5호, 한국e-비즈니스 학회, 2010년, p.404

있어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앞서나가고 있으며 일본도 EPA나 TPP 등을 강화하여 경제 불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이 FTA 등의 이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AEO 인증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EO 인증을 취득하는 데 중소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관련 당사자들의 AEO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한일 양국의 세관 및 관세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한중일 세관당국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AEO 상호인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국의 세관당국이 정보교환의 연계를 통하여 세관수속과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금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일본의 관세법의 최근 개정내용과 세관행정의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의 최근 변화된 법령과 행정의 방향 등을 이해하고 관련기업 및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고려한다면 양국이 관세 및 세관행정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한중일 3국의 관세당국 대표자의 회의가 시작되어 세관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에 지적재산권 보호, 밀수정보의 교환, AEO 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등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AEO 제도의 상호인정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기능적 경제통합이 크게 진전된 3개국간의 무역원활화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일본 관세법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일본 관세정률법  
일본 재무성(2010년 12월), 平成22年關稅改正における主な検討項目.  
일본 재무성(2010년), 平成22年度關稅改正の概要及び規模.  
일본재무성 관세국(2010년 10월), 暫定的減免稅制度の適用期間の到來について.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재정금융통계월보 제699호  
JETRO(2000년 10월), ユーロトレンドレポート.  
JETRO, 纖維製品の對日輸出にかかる原產地規則  
岸元浩(2010년 2월), 平成22年度關稅改正について, ファイナンス.  
김중성,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유통정보학회지 제11권 4호, 유통정보학회, 2008년  
안재진, 일본의 AEO 제도 추진과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 추진방향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1호, 한국관세학회, 2008년  
이남구·곽현, 일본의 통관EDI 추진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4호, 한국관세학회, 2005년  
최준호·한상현,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MR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5호, 한국e-비즈니스 학회, 2010년,  
최홍석·김은미, 쌀시장 개방의 딜레마-시기별 정부대응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3권 3호, 한국정부학회, 2011년

---

## Abstract

### Sugges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on in Korea and Japan\*

Kong-Woo La\*\* · Jin-Wook Kang\*\*\* · Hyoung-Cheol Kim\*\*\*\*

Japan's customs ensure the safety of internat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has been pursuing. To do this, AEO was introduced to this system and expanding the supply chain currently maintain security and improve customer convenience is necessary to continue to be pursued. In addition, the imposition of customs dutie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environment to Tariff offenders and increased the amount of tax evasion, smuggling of narcotics, including amphetamines and response, the increase in access is required. In this paper, Japan's tariff and customs administration for the change in the future for Japan-related materials around the Treasury Department's analysis will attempt to draw implications for this.

**Key Words** : Japan's Customs Law, Japan's tariff , AEO, EPA, TPP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32A-B00114)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Trade, Kyungin Women's College

\*\*\* Assistance Professor, Dept. of Trade, Kyungung University

\*\*\*\* Exclusive charge Researcher, Kyungin Women's College